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4호
- 나. 발 의 자 : 김용석(서초) 의원외 11명
- 다. 발의일자 : 2014년 9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9월 17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중 보행 산책로 등은 도시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골자

- 시장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 「하천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

가.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중 보행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세부사항별 검토결과

1)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제1항제2호)

-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금연구역에 하천¹⁾ 연변의 보행자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1)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하며,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이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이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은 따로 붙임 1과 같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청계천 연변 보행길 및 한강시민공원 중 보행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따로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현황

〈표〉 금연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소수)

계	광장	시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소
364	3	22	339

〈표〉 시공원 지정 현황

연 번	명 칭	소 재 지
1	서울숲공원	성동구 성수동1가 685 일원
2	응봉공원	금호1가 1-72 일원
3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4	천호공원	강동구 천호동 360
5	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236 일원
6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길동 18-3 일원
7	남산공원	중구 회현동1가 100-177 일원
8	훈련원공원	중구 을지로5가 40-3 일원
9	낙산공원	종로구 동숭동 산2-10 일원
10	용산공원	용산구 용산동6가 68-90 일원
11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산30-7 일원
12	간데메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원
13	서울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1 일원
14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번동 산28-6 일원
15	월드컵공원	마포구 상암동 478 일원
16	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일원
17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267-1 일원
18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일원
19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일원
20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 18 일원
21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양화동 95
22	푸른수목원	구로구 향동 10-1